

우편법 제19조,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계약등기 우편요금과 부가취급 수수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등기 우편요금

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

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취급 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1) 종류별 표준요금(환부취급수수료 포함)

종 별		표준요금	비 고
신용카드*	동의서 첨부 1형	3,600원	- 동의서 자체 출력·첨부 - 서명 받은 동의서 종합 및 사후관리
	동의서 첨부 2형	3,400원	- 동의서 제작·첨부된 우편물 취급 - 서명 받은 동의서 후속조치 없음
신분증류	주민등록증	3,100원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포함
	운전면허증	3,100원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포함
	보훈카드	3,100원	
	여권	2,700원	
	장애인복지카드	3,100원	
	외국인등록증	3,000원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포함
중요서류	출입국관리서류	3,100원	
	공인인증서류	3,100원	회송우편 수수료 포함
	기타 중요서류	3,100원	

* 본인지정배달과 회송우편 수수료 포함

2) 중량 구간별 요금

- o 100g 까지 중별 표준요금 적용
- 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부가취급 수수료

종 별	수수료(원)	비 고
착불배달	500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
회신우편	1,000	
본인지정배달	300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	
환부취급 사전납부	환부취급수수료 × 환부율	일반 계약등기

나. 환부취급 사전납부

1) 대상 : 1회 500통 이상이고 매월 10,000통 이상 발송되는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

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환부율을 적용한 환부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

3) 환부율 산정

가) 최초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①이 없을 경우 ②, ②가 없을 경우 ③순으로 적용

- 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환부율
- ②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환부율
- ③ 전체 등기우편물 환부율

나)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환부율 산정 적용

3. 일반 계약등기의 환부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

가.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

나.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함

다.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 3%

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

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

3) 30만 통 이상 : 3% 이내

라.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환부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 호(2013. 5. 31.)는 폐지한다.